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종신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하나로연결된 종신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2년 8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남 효 성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종신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및 세목

명칭	세목
무배당 ① 하나로연결된 ②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또는 ②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를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① 또는 ②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무배당 하나로연결된 종신보험(일반형)의 경우 무배당 하나로연결된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이며, 무배당 하나로연결된 종신보험(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과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 판매하지는 않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남자	여자	
종신	20년납	만 15세 ~ 62세	만 15세 ~ 67세	월납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3개월분(당월분 포함) 이상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회사가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계약체결시점의 평균공시이율을 말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이 보험의 약관 제 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13.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 전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은 없다.

나.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보험료 납입횟수'가 12 회차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text{해지환급금} = \text{해지시점까지 납입보험료 합계금액} \times \text{해지환급률}$$

$$1) \text{ 계약일로부터 7년 이전 해지환급률} = 10\% + \left[90\% \times \frac{\text{보험료 납입횟수}}{84 \text{ 개월}} \right]$$

$$2) \text{ 계약일로부터 7년 초과 해지환급률} = 100\%$$

다만, 계약일로부터 7년을 초과한 시점에 해지하더라도 보험료 납입횟수가 84 회를 초과하지 않으면 해지환급률 계산은 '1)'에 따라 계산한다.

다. 보험료 납입횟수는 계약자가 해지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한 횟수(연체시 납입횟수는 증가되지 않으며 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납입 횟수는 제외)를 말한다. 납입보험료 합계금액은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할인전 보험료)를 해지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당월분 이외의 선납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계약의 변경 등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 약관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 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이 면제된 기간 동안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보고 보험료 납입횟수 및 납입보험료 합계금액을 계산한다.

14. 해지환급금 일부지급에 관한 사항

- 가. 이 계약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형 상품”의 해지환급금 대비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반형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 나. “일반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은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과 달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다. “일반형 상품”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장내용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사망시점까지 납입보험료 합계금액에 추가설계 사망보험금 비율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
- 라. 회사는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을 “일반형 상품”의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환급률 포함)의 수준과 비교하여 안내한다. 다만, “일반형 상품”은 비교안내를 위한 종목으로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는 상품이다.
- 마. 회사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별첨 제 1 호)에 따른 별도의 확인서를 받는다.

15. 기타

-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나. 연금전환에 관한 사항
 - (1)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한다.
 - (2) 무배당 하나로연결된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 (3) 연금전환은 전환시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전환된다.
- 다. 상품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 서식

*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아래
[필수비교 확인사항]은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필수비교 확인사항]

[기준: 성별 XX 세, XX 년남, 월남,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XX 원, 특약제외]

□ 납입보험료 비교

구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보험료		

□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경과기간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일반형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해지환급금	해지환급률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3년				
5년				
7년				
10년				
20년				
30년				
50년				

(별첨 제2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3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4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